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12. 21 선고 2021가단574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21.

주 문

1. 가. 피고 A과 C 사이에 전북 익산시 D 전 5,106㎡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,
나. 피고 B과 C 사이에 전북 익산시 E 대지 298㎡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,각 취소한다.
2. 가. 피고 A은 C에게 전북 익산시 D 전 5,106㎡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. 10. 4. 접수 제40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나. 피고 B은 소외 C에게 전북 익산시 E 대지 298㎡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. 10. 1. 접수 제40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한진희

별지